

한두환 수의사·변호사의 법률칼럼 - 수의사의 생활법률 (30)

동물병원 운영과 관련한 허위행위



한 두 환
법무법인 송파
변호사
lawvet@naver.com

김명의 수의사는 한국대학교 수의학과를 졸업하고 명의동물병원을 개원하였다. 하지만 예상보다 병원 운영이 지지부진하자 조바심이 일기 시작했다.

다른 동물병원의 경우를 살펴본 결과 박사학위를 취득한 수의사들도 많았고, 여러 수의사들의 협진과 최신 의료장비를 홍보하는 동물병원도 많았다. 김명의 수의사는 명의동물병원 홈페이지에 병원에 없는 모바일 CT나 C-Arm 엑스레이 장비 등을 갖춘 것처럼 소개 페이지를 만들었다. 또한 수의학 학사만을 취득하였으나, 외국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것처럼 학위증을 제작하여 병원 대기실에 게시하였다.

명의동물병원 홈페이지를 보고 이견주씨는 반려견 순돌이를 데리고 내원하였다. 순돌이는 호흡곤란, 빈맥 등의 증상을 보였고, 엑스레이 검사상 횡격막 허니아로 진단되었다. 이견주씨는 몇 개월 전 순돌이가 교통사고를 당한 일이 있다고 얘기했다.

김명의 수의사는 순돌이에 대하여 교정 수술을 권유하였다. 이견주씨가 수술을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자 김명의 수의사는 외상 후 장기간이 소요된 경우 수술 후 흉강 변위로 사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얘기하지 않은 채 수술을 하면 순돌이가 완치될 수 있다고만 장담하였다. 이에 이견주씨도 수술에 동의하였으나, 순돌이는 수술 직후 사망하고 말았다.

이견주씨는 농림축산식품부와 경찰에 김명의 수의사를 처

벌해달라고 신고하면서, 김명의 수의사의 학위나 병원장비도 의심스럽다고 신고하였다. 김명의 수의사는 처벌이나 불이익한 처분을 받게 될까?

김명의 수의사에게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1)실재하지 않는 의료장비를 갖춘 것처럼 홈페이지에 홍보한 일과, (2) 허위의 박사학위 학위증을 게시한 일, (3)이견주씨에게 수술 전에 순돌이의 사망 가능성을 언급하지 않고 수술을 진행하다가 결국 사망한 일이다. 이에 대하여 관련 법률에서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자.

허위의 의료장비 홍보

김명의 수의사가 허위의 의료장비를 갖춘 것처럼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은 허위광고에 해당한다. 누구든지 허위광고를 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것은 당연한 상식이다. 그런데 수의사가 허위광고를 하는 경우는 법률상 어떤 제재가 가능할까?

가. 수의사법 위반

[수의사법] 제32조 제2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의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수의사법시행규칙] 제20조의2 제3호는 “허위광고 또는 과대광고 행위”를 명시하여 제재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러므로 김

명의 수의사는 최대 1년 동안의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나. 사기

광고는 소비자들을 끌어들여야 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허위광고나 과대광고가 모두 사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를 넘어 광고한 경우는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의료장비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인데,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C-Arm 엑스레이 등을 갖추었다고 광고한 것은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는 일이라고 하겠다. 그러므로 위 대법원 판례의 입장에 따를 때 김명의 수의사의 허위 의료장비 홍보는 사기죄에도 해당한다.

학위에 대한 허위 공표

가. 수의사법 위반

허위의 학위증을 게시한 행위는 허위광고에도 해당하지만 [수의사법]은 학위를 허위로 공표한 경우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수의사법] 제32조 제2항 제5호는 면허정지 사유로서 “학위 수여 사실을 거짓으로 공표하였을 때”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학위는 수의사의 역량과 관련한 사항이므로 특별히 규정한 것이라 하겠다.

김명의 수의사가 학위증을 게시한 것은 학위 취득 사실을 공표한 것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김명의 수의사는 역시 최대 1년의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나. 사기

허위의 학위증을 게시한 행위 역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는 일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역시 사기에 해당한다.

다. 사문서위조

허위의 학위증을 게시한 행위는 한 번에 여러 규정을 위반한 경우인데, [형법] 제231조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 등을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를 사문서위조죄로 처벌하고 있다. 학위증은 김명의 수의사가 박사학위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문서로서 이를 임의로 제작한 것만으로 김명의 수의사는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

라.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제236조는 위조한 문서를 실제 사용한 경우를 별도의 죄로 규정하고 있다. 김명의 수의사가 허위의 학위증을 제작한 행위는 사문서위조죄이나 그 학위증을 게시한 행위는 별도로 위조사문서행사죄가 된다.

예후가 불명확한 치료의 설명의무

횡격막 허니아에서 수술 후 환자가 돌연사하는 경우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며, 순돌이와 같이 외상 후 장기간이 지난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그러므로 순돌이가 사망하였다는 것만으로 김명의 수의사가 의료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지만 김명의 수의사의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순돌이가 사망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이 예후가 불명확한 수술에 있어서 사전에 그 위험성을 보호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수의사법] 제32조 제2항 제6호는 동물병원 운영과 관련한 부적절한 행위를 면허정지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수의사법시행규칙] 제23조에서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예후가 불명확한 수술 및 처치 등을 할 때 그 위험성 및 비용을 알리지 아니하고 이를 하는 행위”로 명시하고 있다.

김명의 수의사는 이견주씨에게 수술 전 횡격막 허니아 수술의 위험을 고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수술만 하면 순돌이가 완치될 수 있다고 장담하였다. 특히 이는 이견주씨가 순돌이의 수술을 결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에 김명의 수의사는 최대 1년의 면허정지 처분이 가능하다.

허위행위의 위험

동물병원을 운영하다 보면 허위로 보호자들을 기망할 유혹을 받기 쉽다. 보호자들이 허위의 사실을 알기 어려운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그러한 행위가 보호자들에게 탄로날지를 따지기 전 우선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임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